

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의 안 번 호	881
------------	-----

2000. 2. 16.

1. 제안이유

-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(법률 제6002호) 및 동법 시행령 (대통령령 제16672호) 의 개정 에 의하여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정례회로 변경되어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 임.

2. 주요내용

- 동 조례 제2조 제2항에 「정기회」를 「제1차 정례회」로 개정하는 것으로써

3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변경 실시토록 본 조례를 개정하므로써 상위법규에 부합됨은 물론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와 감시로 대시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.